산업통상자원부	**보도참고자료**	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	
보도 일시	**2022. 10. 8.(토) 배포즉시**	배포 일시	2022. 10. 8.(토)
담당 부서 <총괄>	무역안보정책관 무역안보정책과	책임자	과 장 김영만(044-203-4830)
		담당자	서기관 김정윤(044-203-4831)
			사무관 김미연(044-203-4059)

美 **상무부,** 對中 **반도체 수출통제 강화조치 발표**

- 첨단컴퓨팅·수퍼컴用 **칩 관련 우리** 對中 **반도체 수출 영향은 제한적 -**

- 美**, 중국 내 우리기업에 대해서는 생산차질 없도록 장비 공급키로 -**

□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(BIS)은 **10.7일(美 현지 시각) 반도체 및 반도체 생산장비에 대한 對중국 수출통제 강화조치**를 관보에 게재하였음

1. 통제 대상

❶ 반도체

※ 10.21일부터 발효

▪ **특정사양(연산능력 300TFLOPS, 데이터 입출력속도 600GB/S 이상)의 첨단 컴퓨팅** 칩

- 제3국에서 생산된 고사양 GPU 등도 허가 없이 중국 수출 불가

▪ **특정사양(연산능력 100PFLOPS 이상)의 수퍼컴퓨터에 최종사용**되는 모든 제품

-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도 수퍼컴퓨터 개발·생산 목적이면 허가 필요

▪ 美 **우려거래자(Entity List)**에 등재된 **중국의 28개 반도체·수퍼컴퓨터** 관련 기업에 수출되는 모든 제품

- 제3국에서 특정 사양의 기술·SW·장비로 만든 제품도 허가 필요

※ 상기 3개 품목은 거부추정 원칙이 적용되어, 허가 가능성 낮음

❷ 반도체 장비 ※ 10.7일부터 발효

▪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**반도체 생산목적**인 경우, **장비를 포함하여 모든 미국 수출통제 품목은 허가 없이 중국 수출 불가**

- 로직칩 : **FinFET 구조 또는 16/14nm 이하**
- D램 : **18nm 이하**
- 낸드 : **128단 이상**

▪ 새로이 통제대상에 편입된 **고사양 '증착장비'도 수출제한**

▪ **중국 기업에는 원칙적으로 허가가 거부**(presumption of denial)되는 한편, 우리 기업과 같이 **중국 내 다국적 기업에는 사안별 심사**(case-by-case review)를 통해 허가 발급

2. 산업계 영향

□ 금번 조치가 우리 산업계에 미칠 영향은 **전반적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**

반도체 : **전반적인 영향은 제한적**

① **첨단 컴퓨팅 칩** : 해당 기술기준의 칩은 **국내 생산이 없어 단기적 영향은 없을 것**으로 예상

※ 다만,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AI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등 제한가능성

② **특정사양의 수퍼컴퓨터**에 사용되는 제품 : FDPR*이 적용되는 통제품목이 광범위하나, **수출통제 대상이 되는 수퍼컴퓨터가 극소수**에 불과하여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

* FDPR(해외직접제품규칙) : 특정 미국산 기술·SW·장비를 활용하여 미국 외에서 생산된 경우도 미국산으로 간주하여 미 상무부 수출허가 필요

③ **28개 우려거래자** 대상 수출 : FDPR 적용으로 **통제품목이 광범위**하나, **28개 기업으로 통제대상이 제한** (수출현황 추가분석 필요)

반도체 장비 : **중국 내 우리 기업에 대한 공급은 큰 지장 없을 전망**

○ 중국에서 가동중인 **SK 우시공장, 삼성 시안공장** 등은 중국 기업과는 달리 **'사안별 검토대상'으로 분류되어 장비 공급에 큰 지장은 없을 전망**

○ 다만, **미국 수출통제 당국과의 협의**를 통해 **불확실성을 최소화**할 필요

3. 협의 경과

□ 한-미 양국은 그간 **수출통제 당국, 외교채널**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**긴밀한 협의를 진행**하였음

○ 금번 수출통제는 **美 행정부의 조치로 미측으로부터 사전 정보공유**가 있었음

○ 그간 양국 정부간 협의를 통해 **우리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**해왔으며, 이 과정에서 **우리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**하였음

□ 주요 협의결과는 다음과 같음

○ 중국내 **한국 반도체 공장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중요성**을 감안하여 미측은 **별도의 예외적인 허가절차**를 도입함

- 이를 통해 **현재 운영 중인 공장의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장비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**하기로 하였음

○ 중국 내 **한국 공장 업그레이드**와 관련하여 한국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**명확하고 투명한 방안을 긴밀히 협의**해 나가기로 함

○ 금번 조치 시행과정에서 제기되는 이슈를 검토하기 위해 **산업부와 美 상무부간 한-미 공급망 · 산업대화(SCCD) 산하 수출통제 워킹그룹**을 정례 협의채널로 활용키로 함

4. 후속조치

□ 정부는 금번 미측 **수출통제 조치를 면밀히 분석**하고 우리 업계에 미치는 **영향을 최소화**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임

□ 대중국 수출기업 대상 **수출통제 설명회 개최, 수출통제 가이드라인 배포, 전략물자관리원 내 수출통제 데스크 운영** 등도 추진

※ 전략물자관리원 "수출통제 데스크" 대표번호는 ☎(02-6000-6498)이며, 전략물자관리원 홈페이지에 미국 수출통제 조치 관련 정보를 게재할 예정

□ **미 상무부 설명회**(10.13, 현지시각), **60일 의견수렴**(public comment) **절차** 등에 적극 참여하여 **우리 업계의 의견을 추가 개진**하고 관련 규정에 대한 **유권해석 등을 적극 지원**할 방침임

□ 아울러, 조속한 시일 내 **'한-미 수출통제 워킹그룹'을 개최하**여 기업 애로사항 등을 집중 협의할 계획임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